

군산시 공고 제2024-2490호

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27일  
군 산 시 장



##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-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처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되고 국무조정실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2022.7.5. 시행되며 환경부 「지속가능발전법」은 2022.7.5. 타법폐지 됨
- 상위법 소관부처 조정으로 우리 시도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를 제정(2022.11.09., 기획예산과)하여 군산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3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7.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○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환경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군산시장(참조 : 환경정책과장)

- (1) 주소: (54078) 군산시 시청로 17, 환경정책과(조촌동, 군산시청)
- (2) 전화: 063-454-3382
- (3) 팩스: 063-454-6028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
- (4) 전자우편 : [wideml@korea.kr](mailto:wideml@korea.kr)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견서 1부.  
 2. 폐지조례안 1부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이 유	비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조례 제 호

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참고**

**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**

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17.03.28]

(일부개정) 2017.03.28 조례 제1421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환경정책과

관리책임전화번호 : 4543380

**제 1 장 총칙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」 제18조에 의하여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28>

**제2조(명칭)**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은 “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17.03.28>

**제3조(사업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「군산시지방의제21」의 작성
2. 「군산시지방의제21」의 실천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3.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·계몽사업 및 시민 참여운동 전개
4. 국내 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·유대사업 추진
5. 그 밖에 군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 2 장 조직**

**제4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5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대표는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
③ 공동의장 중 상임의장을 두되, 상임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한다.

1. 군산시 환경관련 의회 의원
2. 환경분야를 전공한 군산지역 대학교수
3. 환경보전 의지가 강한 환경관련 시민단체
4. 기업체의 환경분야 실무 책임자
5. 시 환경관련 국장 및 과장

6.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⑥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은 관련분야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7.03.28>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① 모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사망,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
- 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- 3.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

**제7조(의장의 직무)**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, 『군산시 지방의제21』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상임의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 등 의장단의 임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.

**제8조(고문)**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,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(분과위원회)** ① 제4조제5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15명 내·외로 하며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필요시 확대할 수 있다

- 1. 기획·홍보분과
- 2. 자연생태분과
- 3. 도시환경분과
- 4. 기후변화대응분과

②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

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승인 후 사업 결과를 보고한다.

④ 분과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⑤ 분과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이 선임한다.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, 각 분과위원장, 지방의제21 담당부서의 과장, 시의원 1명, 사무국장,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한 1명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협의회 조례 및 규칙제정 및 개정(안) 작성
2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3. 예산·결산의 수립·집행 및 결산보고
4.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출
5. 신규 논의 의제 선정 및 협의회에 제안
6.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
7.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주요사항의 결정

**제 3 장 운영**

**제11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협의회 총회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비치한다.

**제12조(사무국)**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이 선임한다.

③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한다.

④ 사무국은 협의회 사업과 각 부문의 사무를 취합하며 각종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기타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.

**제 4 장 재정지원**

**제13조(연구 및 지원)** ① 군산시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 결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.

② 정책사업 발굴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월별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3.28>

④ <삭제 2017.03.28>

**제14조(수당 등)**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회계년도)**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.

**제16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**부칙(2009.09.30 조례 제89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17.03.28 조례 제1421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산시 공고 제2024-2491호

「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규칙」를 폐지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27일

군 산 시 장



## 「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」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- 이 규칙은 “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”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-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〔시행 2017. 03. 28〕에 의해 “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”의 명칭은 “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로 변경
- 상위조례인 「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따라 「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」 폐지

### 3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7.(20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- 본 폐지규칙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환경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군산시장(참조 : 환경정책과장)

- (1) 주소: (54078) 군산시 시청로 17, 환경정책과(조촌동, 군산시청)
- (2) 전화: 063-454-3382
- (3) 팩스: 063-454-6028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
- (4) 전자우편 : [wideml@korea.kr](mailto:wideml@korea.kr) (수신 여부 확인 필요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(063-454-33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견서 1부.  
2. 폐지규칙안 1부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 : 군산시지방의회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이 유	비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조례 제 호

###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 폐지규칙안

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은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참고**

**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**

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  
(전부개정) 2001.07.16 규칙 제264호

관리책임부서명 : 환경정책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4543380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)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은 "푸른군산21추진협의회" 라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방의제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반영
2.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주도
3. 고질적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관련민원에 대한 의견제시
4.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
5. 기타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등

**제4조(구성)**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한다.

1. 군산시 환경관련의회 의원
2. 환경분야를 전공한 군산지역 대학교수
3. 환경보전 의지가 강한 환경관련 시민단체
4. 기업체의 환경분야 실무자
5. 시 환경관련 국장 및 실과소장
6.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촉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등)** ①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은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.

③간사는 공무원 1인 및 시민단체 소속직원 1인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총회는 년 1회로 한다.

②총회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시, 장소,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안건의 검토)** ①협의회에서 토의할 안건은 사전에 위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환경오염사고 발생등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화등으로 통보한 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(출석요구)** ①협의회장은 토의된 안건중에 고질적인 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등 가능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안건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 및 환경관련시민단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들의 참석없이 토의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안의 처리결과 통보)** ①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심의 결정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협의회 사업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「지방의제21」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실비변상)** 공무원이 아닌 자가 협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개정 2015.08.03>

**부 칙(1997.4.24 규칙 제145호)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1.7.16 규칙 제264호)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